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9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백선희 · 양부남 · 차규근
손명수 · 정춘생 · 황명선
강경숙 · 이학영 · 이수진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나목 및 다목 중 “3억원”을 각각 “6억원”으로, “6억원”을 각각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
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
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
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
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
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

-----.

1. -----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가. -----

6억원-----9억원-----

나. -----

6억원-----9억원-----

다. -----6억원-----
-----9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 (생략)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

라. (현행과 같음)

2. -----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② -----

-----500만원-----

-----300만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